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대학설립·운영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학설립·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「고등교육법」 개정에 따라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상호조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·운영을 위해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정원을 상호조정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의3 및 별표1의6 개정)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학설립·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

대학설립·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3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

별표 1의6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·운영하는 전문대 학	4.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 여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의3(학과·정원 등의 증설·증원 기준) ① ~ ⑤ (생략)	제2조의3(학과·정원 등의 증설·증원 기준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대학(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교원확보율이 65퍼센트 미만인 대학은 제외한다)이 구조개혁을 위하여 별표 1의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의 상호 조정(이하 “상호조정”이라 한다)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 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.	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
1.·2. (생략) <u><신 설></u>	1.·2. (현행과 같음) 3. <u>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</u>
⑦ (생략)	⑦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394